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00

발의연월일: 2021. 3. 8.

발 의 자:전혜숙·김회재·박성준

서동용 • 안호영 • 양경숙

양이원영・양정숙・윤영찬

윤후덕 · 이용빈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2월 발생한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 사고는 열악한 연구실 안전 실태를 알리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현행 법령 및 제 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 그러나 정작 해당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들은 불분명한 법적 근거와 대학 측 의 소극적인 태도로 막대한 규모의 치료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지 못 하고 있음.

이 같은 상황은 현행법이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를 대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가입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보상을 초과하는 피해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서 비롯됨.

이에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보험가입)"을 "(보험가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 · 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2항에 따라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 제목 중 "자료"를 "자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보험회사에"를 "보험회사 및 연구주체의 장에"로, "보상"을 "보상 및 치료비지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비 지원의 적용 범위에 관한 특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발생한 연구실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보험가입) <신 설>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
	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
	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
	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
	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생 략)	<u>②</u>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연구주체의 장은 <u>제1항</u> 에	<u>③</u> <u>제2항</u>
따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	
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	
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
	종사자가 제2항에 따라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
	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보험 관련 <u>자료</u> 의 제출)	제27조(보험 관련 <u>자료 등</u> 의 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	출)
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u>보험회사에</u> 대하여 보	보험회사 및 연구주체의 장에

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u>보상</u>	
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	<u>보상 및 치료비 지원</u>
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